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은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27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6.

발 의 자 : 박은정 · 박지원 · 진선미
김용민 · 문정복 · 황운하
김재원 · 백선희 · 정춘생
김준형 · 민형배 · 양부남
박수현 · 이해민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재판연구원은 2011년 개원한 이래로 신속하고 정확한 헌법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선행적 연구 수행, 법률 전문가부터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맞춤형 헌법교육 제공 등 헌법 수호 및 국민의 기본권 보호, 사회 전반에 대한 헌법 정신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.

그러나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원장 포함 40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헌법재판연구원이 보다 심화된 연구 및 다변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할 인력을 적시에 확충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.

또한,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, 헌법 및 헌법재판 전

문 연구·교육기관이라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위상 및 유사한 성격의 타 기관장 직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음.

더불어,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 내 교육을 담당하는 인적 구성현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, 이를 법률상 명확히 함으로써 규범과 실무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, 헌법재판연구원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상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, 기관 위상 제고와 우수 인재 확보 등을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,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기능의 법률과 실무 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전담 인력인 교수를 구성원에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4).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”를 “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,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임명하고, 연구관 및 연구원은”을 “임명하고, 교수, 연구관 및 연구원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연구관 및 연구원은”을 “교수, 연구관 및 연구원”으로 한다.

② 헌법재판연구원에 원장 1명, 부장, 팀장, 교수,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의4(헌법재판연구원) ① (생 략)	제19조의4(헌법재판연구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</u> <u>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</u> <u>내로 하고, 원장 밑에 부장, 팀</u> <u>장,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.</u>	② <u>헌법재판연구원에 원장 1명,</u> <u>부장, 팀장, 교수, 연구관 및 연</u> <u>구원을 둔다.</u>
③ 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 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 연구관으로 보하거나 <u>1급인 일</u> <u>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.</u>	③ ----- ----- ----- <u>정무직공무원으로</u> <u>임명하고, 그 보수는 차관의 보</u> <u>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.</u>
④ 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2급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으로, 팀 장은 헌법연구관이나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<u>임명하</u> <u>고, 연구관 및 연구원은 헌법연</u> <u>구관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</u> <u>임명한다.</u>	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임명하</u> <u>고, 교수, 연구관 및 연구원은-</u> ----- ----- -----.
⑤ <u>연구관 및 연구원은 다음</u>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<u>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</u> <u>보하거나 헌법재판연구원장의</u>	⑤ <u>교수, 연구관 및 연구원은</u> ----- ----- -----

제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. 1. ~ 4. (생략) ⑥ (생략)	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⑥ (현행과 같음)
---	---